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6.

발 의 자 : 이종욱 · 안철수 · 서천호  
김종양 · 이성권 · 권영세  
김은혜 · 이종배 · 조승환  
최은석 · 송언석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, 충전시설 설치·운영,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어 지역과 단지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하고, 이에 따른 갈등과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(충전시설 포함)의 설치 및 운영·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

려는 것임(안 제3조 등).

##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실태조사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”를 “수급실태조사, 안전관리실태조사 및 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의”로 한다.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라 한다) 주차시설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주차장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(충전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제6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6항에서 같다)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(이하 “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전용주차구획(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)을”을 “전용주차구획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환경친화적 자동차

법률 제2141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원활한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) ① · ②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③ <u>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</u> 방법·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</p>	<p>제3조(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라 한다) 주차시설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주차장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(충전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제6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6항에서 같다)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(이하 “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수급실태조사, 안전관리실태조사 및 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</u>의----- -----</p>



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